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49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u> <u>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u> <u>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u> <u>할 수 있다.</u> 1. <u>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u> <u>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u> 2. <u>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u> <u>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u>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01. 0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67호, 2022. 10.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제4조(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
4.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제4조의2[중전 제4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19.10.10>]

제4조의3[중전 제4조의3은 제8조로 이동 <2019.10.10>]

제5조삭제 <2019.10.10>

제6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개정 2013.10.31>
3.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삭제<2022.10.15.>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